

# 예 산 총 칙

2011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3,794,995	13,913,850
일반회계	434,150,509	13,024,515
특별회계	29,644,486	889,335
공기업특별회계	12,017,478	360,52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017,478	360,524
기타특별회계	17,627,008	528,81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28,470	105,854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2,016,105	60,483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269	38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2,172,573	65,177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490,494	224,71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418,097	72,543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1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사고이월 사업은 별첨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20,39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